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26(목) 15:00 배포 2026.11.26(목) 09:00

“다음 미션만 성공하면 수익금이 2배?”
☞ 나만 아는 ‘꿀알바’가 아닌 ‘팀미션사기’ 입니다.

✓ FIU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6월 30일부터 시행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성과 및 보완계획을 논의

- 약 18,670건의 범죄 의심계좌가 임시조치되어 추가 피해를 차단
- 최근 증가하는 부업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팀미션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기 의심 즉시 피해금을 이체한 금융회사 및 경찰에 신고할 필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26.11.26일(목)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 ▲부업을 가장한 사기수법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팀미션사기의 위험성, ▲금융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신속한 거래정지를 통해 범죄 이용 계좌의 사용이 어려워져 신종피싱 범죄 피해가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최근 부업을 가장한 팀미션 사기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11.26.(목) 15: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 금융정보분석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금감원, 금융업계*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 **(안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팀미션사기 범죄양상 및 주의사항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 등

신종피싱 거래정지 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1. 개요 및 운영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청 통합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지난 6.30일부터 금융회사가** 신종피싱 범죄 **피해금이 이체·입금된 계좌의 거래**를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노쇼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6.30일 제도 첫 시행 이후 11.20일까지 **신종피싱**으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18,67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확인된 건은 **총 15,729건**으로, **로맨스스캠이 약 46%(7,218건), 노쇼사기(대리구매 사기)가 약 23% (3,622건), 팀미션사기가 약 31%(4,889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행 성과

제도 시행 이후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사기**의 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정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 간**의 피해액은 시행 전 3개월 대비 **49.9% ('26.2분기 1,084억 원 → '26.3분기 543억 원)** 감소하였으며, 발생건수 역시 **42% ('26.2분기 3,468건 → '26.3분기 2,011건)** 감

소하였다.

※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사기 월별 피해액 및 발생건수



(자료 : 경찰청)

이는 **선제적인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범죄수익의 인출이 어려워짐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며, 그 밖에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피싱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 대책 등 **부처 간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신종피싱 관련 별도의 지급정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법적 피해환급 절차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적극적인 거래정지 조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금이 신속하게 동결되어 **사법적 피해자금 보전 절차(민사상 (가)압류 결정)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금융회사별 주요 피해자금 보전 사례

◆ **(A은행) 10억원 이상의 피해자금**이 거래정지 조치 이후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통해 **사법적으로 보전됨**

◆ **(B은행) ▲▲국립과학관 행정사무실장을 사칭**해 의료기기를 대리구매 해달라는 수법을 활용한 **노쇼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5,000만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범죄 의심계좌를 신속하게 거래정지 조치.** 이후 피해자는 거래정지 기간 중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자금을 보전**

◆ **(C은행)**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잔액 1억원 이상의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정지 조치. **이후 약 20일 뒤** 동일 금액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접수**하여 **고액의 피해자금이 사법적으로** 동결됨

주요 범죄 양상 – 팀미션사기(온라인 부업사기)

FIU의 **거래정지 현황 분석 결과** 최근에는 부업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팀미션사기의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가정주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불특정 일반 국민**을 범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팀미션사기의 주요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❶ **SNS, 문자**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을 광고**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❷ **미션 수행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바람잡이들의** 수익 인증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다. 이후 **미션 참여 분위기가 고조**되면 피해자에게 미션 수행시 필요한 사전 **적립금, 참가비 등을 입금하게 한다.** 다만, 최근에는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지 않고 **개별 미션을 1:1로 부여하는 형태의 사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미션·부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팀미션 사기 피해자 대화내역 재구성(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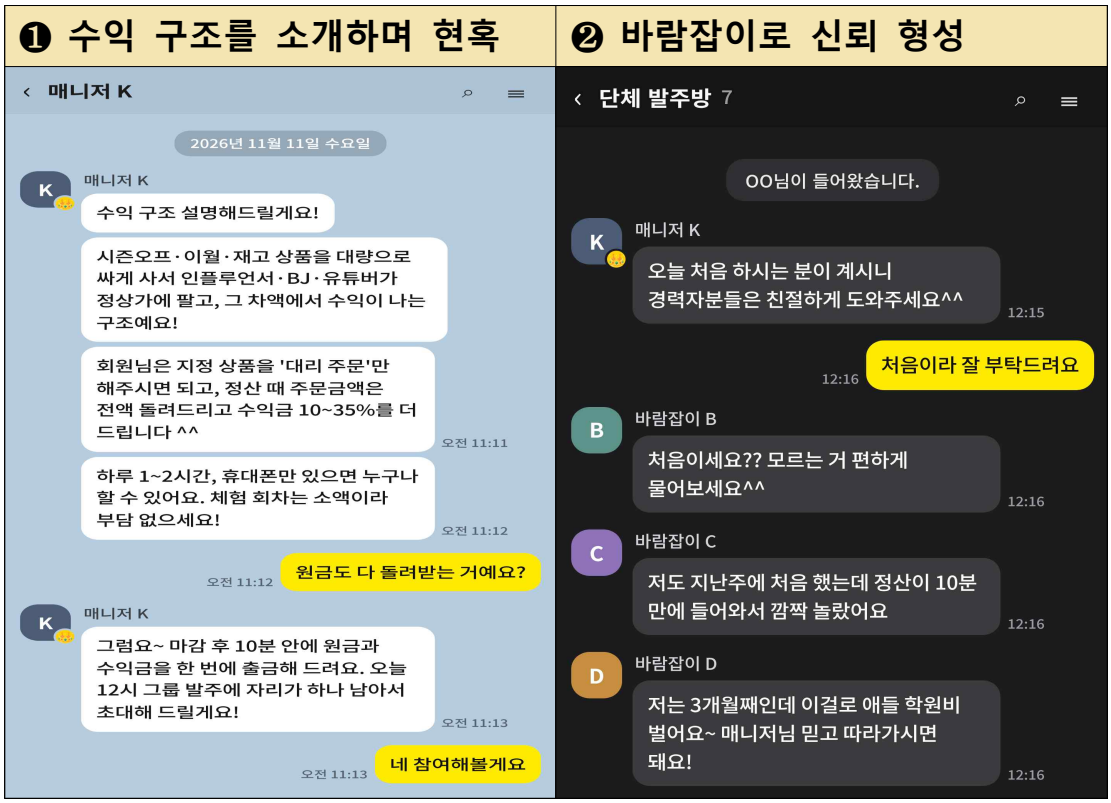

❸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이 걸려 있는 미션**을 제공하고,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한다. ❹ 그러나, 이후 미션수행 회차 및 단계가 상승할수록 미션 **수익금도 계단식으로 상승**시키면서 **더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모든 미션이 끝난 이후 한번에 정산**해준다는 규칙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중도포기를 어렵게** 하고, **피해규모를 확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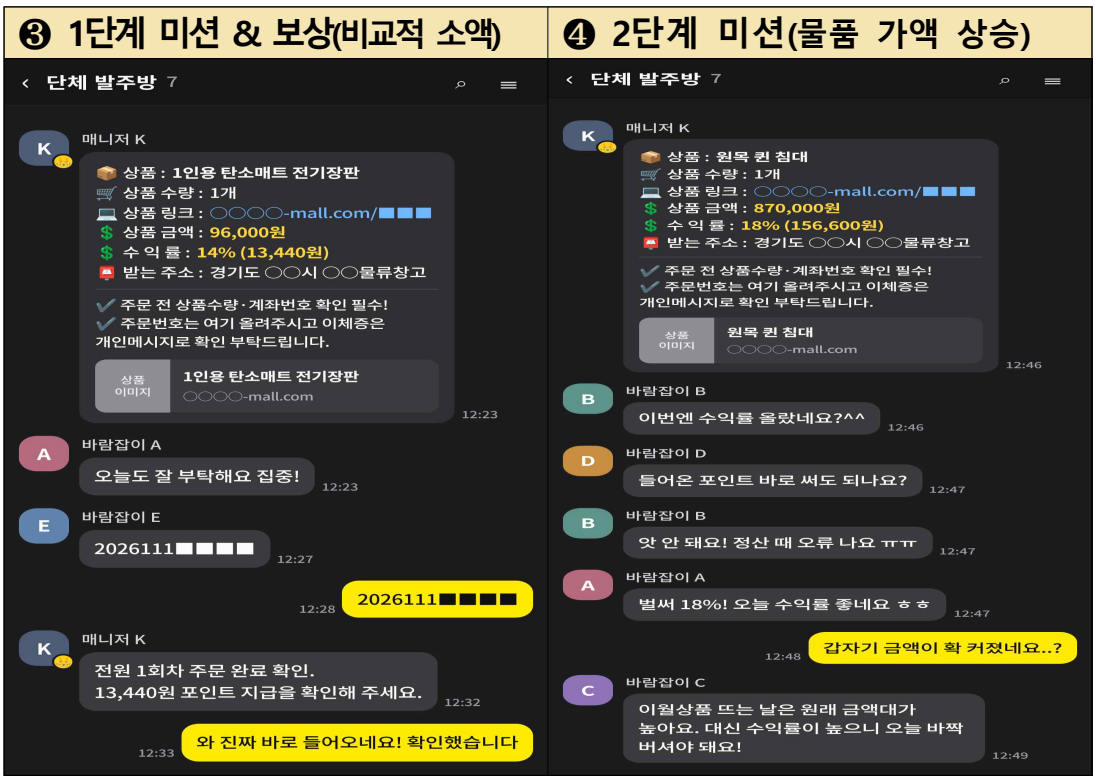

❺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복잡한 미션**을 제공하여 **실수를 유도**하거나,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내세우며 **미션 복구를 위한 추가 입금을 강요**하기도 한다. ❻ 피해자가 **입금을 망설이는 경우** 팀원 모두의 정산이 불가능해진다며 **죄책감을 조성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❺ 피해자 미션 수행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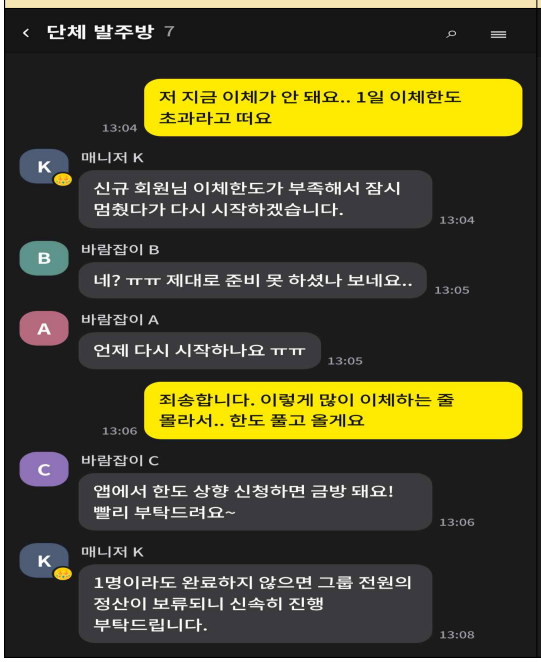

❻ 타 참여자들의 심리적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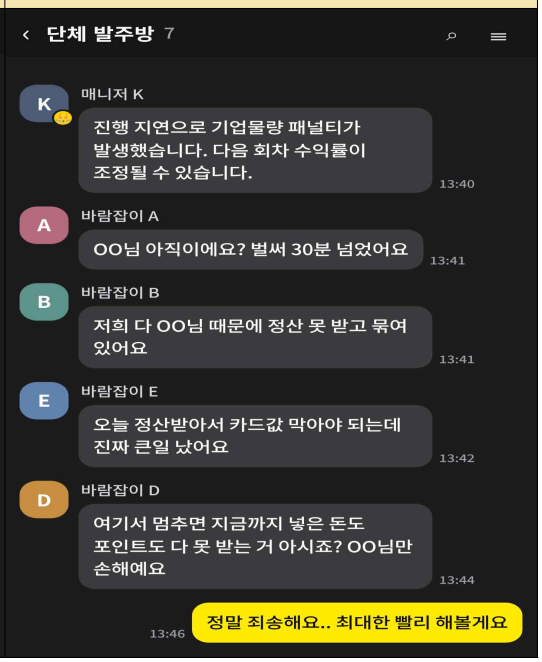

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션 참여 금액**을 상승시키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❽ 피해자가 **최종 피해금을 입금**하게되면 **단체채팅방에서 강제퇴장**시킨다. 피해자는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미션 제공자와 연락이 끊기게 된다.

❼ 미션금액 상승 및 추가 입금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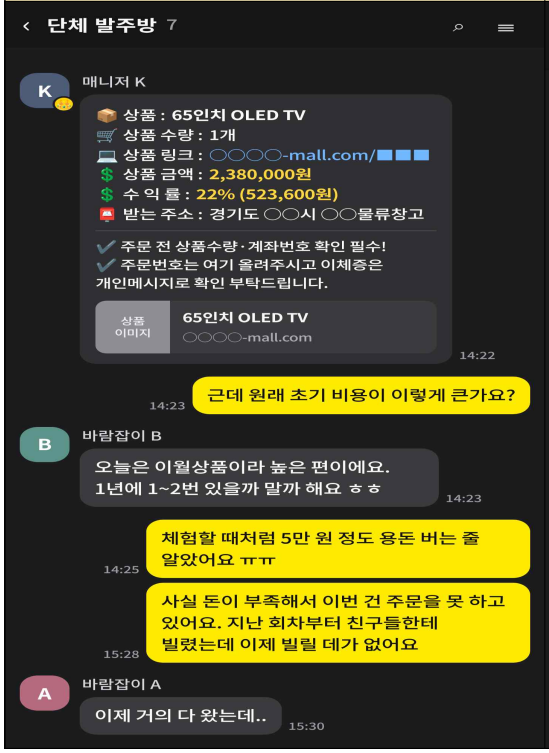

❽ 최종 미션 성공 시 단체방 강제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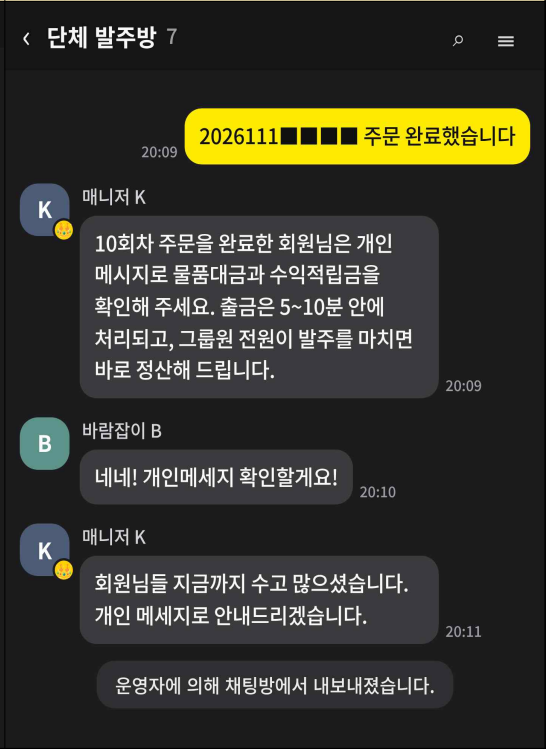

팀미션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익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적 입금을 멈추고, 이체**한 **금융회사 및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를 신속하게 정지**해야 한다.

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경찰 통합대응단**은 거래정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권 실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종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FIU는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12월 중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거래정지 대상 범죄를 신종피싱뿐 아니라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FIU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박민규, 김상훈 의원] '26.11.19. 정무위 상정)**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1720)
		담당자	서기관	정태호	(02-2100-1730)
			사무관	남고운	(02-2100-1817)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이다행	(02-2100-2975)
담당 부서 <공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책임자	과 장	윤창기	(02-3150-2909)
		담당자	계 장	심무송	(02-3150-3097)
담당 부서 <공통>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정란	(044-200-8790)
		담당자	사무관	김연현	(044-200-8786)
담당 부서 <공통>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고선영	(044-200-8440)
		담당자	사무관	박은옥	(044-200-8446)
담당 부서 <공통>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책임자	실 장	김지웅	(02-3145-7500)
		담당자	팀 장	박병일	(02-3145-7502)
담당 부서 <공통>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책임자	국 장	이정만	(02-3145-8150)
		담당자	팀 장	이범승	(02-3145-8140)

담당 부서 <공통>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	책임자	부 장	정재호 (02-3705-5390)
		담당자	팀 장	김 은 (02-3705-5025)
담당 부서 <공통>	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부 장	박민기 (02-3705-5040)
		담당자	팀 장	모경원 (02-3705-5043)
담당 부서 <공통>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본부장	전경수 (02-2080-5057)
		담당자	부 장	이 훈 (02-2080-2202)
담당 부서 <공통>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 청렴준법팀	책임자	팀 장	주성숙 (02-2240-2566)
		담당자	과 장	오종명 (02-2240-5933)
담당 부서 <공통>	신협중앙회 준법지원부문	책임자	부문장	민경대 (042-720-1800)
		담당자	과 장	김민지 (042-720-1816)
담당 부서 <공통>	신협중앙회 ·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책임자	부문장	김종수 (042-720-1461)
		담당자	팀 장	박미연 (042-720-1462)
담당 부서 <공통>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업무부	책임자	본부장	이경연 (02-397-8617)
		담당자	부 장	최승진 (02-397-8670)
담당 부서 <공통>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세탁방지부	책임자	상 무	정찬호 (02-2145-9570)
		담당자	부 장	김은철 (02-2145-9664)
담당 부서 <공통>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	책임자	상 무	천종철 (02-2145-9540)
		담당자	부 장	장봉중 (02-2145-9541)
담당 부서 <공통>	산림조합중앙회 리스크관리부	책임자	부 장	임성훈 (02-3434-7290)
		담당자	팀 장	강현우 (02-3434-7292)
담당 부서 <공통>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자율규제기획부 투자자보호부	책임자	상 무	정형규 (02-2003-9014)
		담당자	부 장	하영훈 (02-2003-9370)
		담당자	부 장	김효실 (02-2003-94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